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63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주철현·홍성국·김병주

양정숙 · 이용우 · 임호선

신현영 · 장철민 · 한준호

오영환 · 이원택 · 김민철

최혜영 · 임오경 · 김남국

이성만 • 이수진 • 윤영덕

정청래 · 장경태 의원

(200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조제5호).

법률 제 호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가목4) 중 "잔교(棧橋)"를 "부두연결 다리"로, "부잔교(浮棧橋)"를 "부부두연결 다리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3) 중 "대합실"을 "대기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항만시설"이란 다음 각 목	5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	
설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	
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	
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	
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시설로	
한정한다.	
가. 기본시설	가
1) ~ 3) (생 략)	1) ~ 3) (현행과 같음)
4) 안벽, 소형선 부두, <u>잔</u>	4)
교(棧橋), 부잔교(浮棧	부두연결 다리부부두
橋), 돌핀(계선말뚝을 말	<u>연결 다리</u>
한다), 선착장, 램프(경사	
식 진출입로를 말한다)	
등 계류시설(繫留施設)	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1)・2) (생 략)	1) • 2) (현행과 같음)
3) <u>대합실</u> , 여객승강용 시	3) <u>대기실</u>
설, 소하물 취급소 등 여	
객이용시설	
4) ~ 10) (생 략)	4) ~ 10) (현행과 같음)

다. ~ 마. (생 략)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6. ~ 14. (생 략)6. ~ 14. (현행과 같음)